

의안번호	제 305 호
의 결 연 월 일	2005년 6월 22일 (제 239 회)

##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5년 5월 16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##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

의안  
번호

305

제출연월일 : 2005년 5월 16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005년 4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5년 4월 28일 충청북도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.

이 유

-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1조의 “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·수산물”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, 제3조제2항의 “우수 농·수산물”을 “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·수산물 등”으로 정의한 내용과
- 도지사가 교육감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면서(제6조) “우수 농·수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
-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WTO 일반원칙과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에 위배됨

첨 부 : 1. 조례안 1부

2. 행정자치부장관 재의요구 지시 공문사본 1부

3. 외교통상부 검토의견 공문사본 1부.

##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학교급식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,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·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목표)**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및 학교장은 다음 각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1. 학생의 영양교육을 통한 식생활의 합리화·영양과 식습관의 개선 및 건강관리능력 배양
2.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·수산물의 생산·배분·소비 및 전통식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
3.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및 건강한 심신발달의 도모
4. 학교급식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

**제3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학교급식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.
- ② “우수 농·수산물”이라 함은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·수산물과 친환경농산물 및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. 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“급식학교”라 함은 제5조의 지원대상중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.

④ “식품비”라 함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음식물의 제조·가공에 사용되는 농·수산물의 구입비를 말한다.

**제4조(자치단체 등의 임무)**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 관계직원은 학교급식관리운영기준을 준수하며,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대상)** 충청북도에 소재하며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학교로 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학교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·고등학교
3.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

**제6조(경비지원)** 도지사는 교육감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신청)**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급식학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장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, 교육감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급식학교의 명칭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

3. 우수 농·수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
  4. 급식시행 계획
  5.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
- ②신청시기, 절차,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8조(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)** ①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,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1.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및 기획관리실장
2.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
3. 충청북도의회 의원
4. 학부모단체
5. 교사단체
6. 농민단체
7. 사회단체
8. 영양사단체

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9조(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지원계획
2.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

**제10조(지도·감독)** ①도지사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교육감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 령

## 【지방자치법 제159조】

第159條 (地方議會 議決의 再議와 提訴) ①地方議會의 議決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市·道에 대하여는 主務부장관이, 市·郡 및 自治區에 대하여는 市·道知事가 再議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, 再議의 요구를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8.31, 2005.1.27>

②第1項의 요구에 대하여 再議의 결과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議決事項은 확정된다.

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再議決된 날부터 20日 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의 執行을 停止하게 하는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. <개정 1994.3.16>

④주무부장관 또는 市·道知事は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訴를 지시하거나 직접 提訴 및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. <신설 1994.3.16, 1999.8.31, 2005.1.27>

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提訴의 지시는 第3項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日 이내에 하고,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提訴指示를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提訴하여야 한다. <신설 1994.3.16>

⑥주무부장관 또는 市·道知事は 第5項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日 이내에 직접 提訴할 수 있다. <신설 1994.3.16, 1999.8.31, 2005.1.27>

### **【GATT 제3조】 :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**

1. 계약 당사자들은 내국세 및 그밖의 내국과징금과 상품의 국내판매, 판매를 위한 제공, 구매, 운송,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·규정·요건과 특정 수량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**내국의 수량적 규정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상품 또는 국내 상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.**